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118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118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합2068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선, 정민희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변론 종결 2024. 10. 10.

판결 선고 2024. 11. 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합20688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양수채권에 관하여 각 양도양수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위생용품, 의료기구 제조 및 도매·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의약품 관련 제품의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의료용 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E가 발주한 제품을 원고와 피고들이 병·의원에 납품하면 F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물품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E가 D를 통하여 발주한 물품을 G병원, H병원 등에 공급하였는데, 2022. 11.경까지 G병원에 공급한 물품대금 382,919,668원, H병원에 공급한 물품대금 267,000,660원 합계

649,920,3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176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23. "D는 원고에게 629,920,328원 및 이에 대한 202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2카단55169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649,920,328원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3. 1. 3.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D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D는 피고들과 사이에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아래 표 '채권액'란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같은 표 '양도양수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E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같은 표 '통지서도달일'란 기재 일자에 E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1	주식회사 B	채권양수	2022.11.29.	2022.11.30.	194,529,019
2	주식회사 C	채권양수	2022.11.25.	2022.11.30.	99,778,140
3	주식회사 B	채권양수	2022.12.13.	2022.12.14.	40,322,867
4	주식회사 C	채권양수	2022.12.13.	2022.12.14.	30,414,450
합계	365,044,476				

라. E의 공탁

E는 2023. 6. 27.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들' 등으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766,104,696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등이 송달되어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766,104,696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1823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22. 11.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649,920,32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상태 여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였고,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물품공급대가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방법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공탁 중 별지2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장정태

판사이혜성

별지